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[제출용]

등기번호	833739
등록번호	110111-8337390

상 호	주식회사 에이치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· ·
본 점	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802호(삼성동, 트레이드타워)	· ·

공고방법	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머니투데이신문에 공고하며,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신문과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한다	· ·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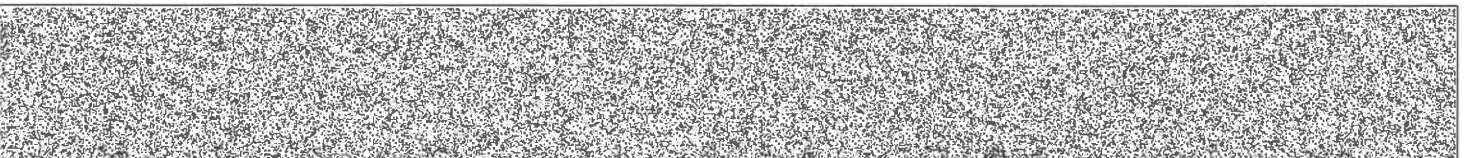
1주의 금액	금 5,000 원	· ·
--------	-----------	-----

발행할 주식의 총수	100,000,000 주	· ·
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
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	자본금의 액	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
발행주식의 총수	60,000 주	금 300,000,000 원	· ·
보통주식	60,000 주		
발행주식의 총수	4,060,000 주	금 20,300,000,000 원	2022.08.31 변경
보통주식	660,000 주		2022.08.31 등기
제1종종류주식	3,400,000 주		
발행주식의 총수	4,000,000 주		
보통주식	600,000 주	금 20,000,000,000 원	2022.09.20 변경
제1종종류주식	3,400,000 주		2022.09.21 등기

목 적	
(1)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(이하 부투법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
1.부동산	
2.부동산개발사업	
3.지상권,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	
4.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	
5.증권, 채권	
6.현금(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)	
(2)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투자·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·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.	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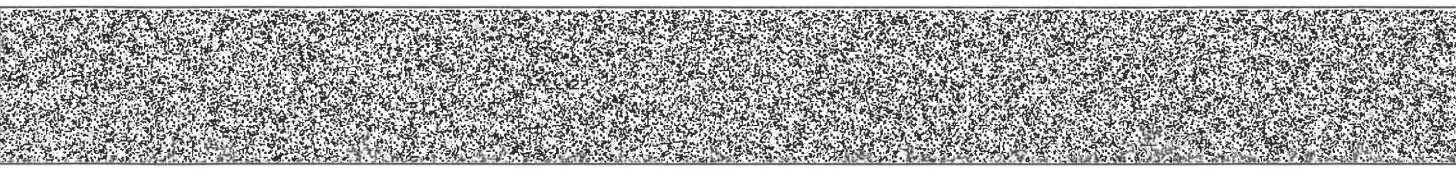


등기번호	833739
------	--------

1. 취득, 개발, 개량 및 처분
2. 관리(시설운동을 포함한다), 임대차 및 전대차
3. 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, 예치
4.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

임원에 관한 사항	
사내이사 박영희 750103-*****	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
대표이사 박영희 750103-*****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, 329동 1901호(원문동, 래미안슈르)	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
카타비상무이사 김연희 801218-*****	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
카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-*****	2022년 08월 31일 사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
감사 박성언 790223-*****	
사내이사 곽동욱 780822-*****	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
카타비상무이사 배성용 900618-*****	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 2023년 03월 30일 사임 2023년 04월 04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김용오 690927-*****	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
대표이사 곽동욱 780822-*****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-15, 105동 1202호(서호동, 제주 서귀포혁신도시엘에이치1단지)	2022년 08월 31일 취임 2022년 09월 13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강희표 720116-*****	2023년 03월 30일 취임 2023년 04월 04일 등기

종류주식의 내용
<p>제1종종류주식</p> <p>①회사는 이천오백만(25,000,000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종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한다.</p> <p>③제1종 종류주식의 우선배당률은 그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5.3%(이하 “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” 이라고 한다)로 한다. 명확히 하면, 어느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제1종 종류주식 배당률은 {(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/ 365(윤년인 경우 366)) X 5.3%}로 산출한다.</p> <p>④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(이하 “보유자산” 이라 한다)의 매각일(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는 매 결산기의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</p> <p>1.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에 따른 금액(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의 누적 금액을 포함한다)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.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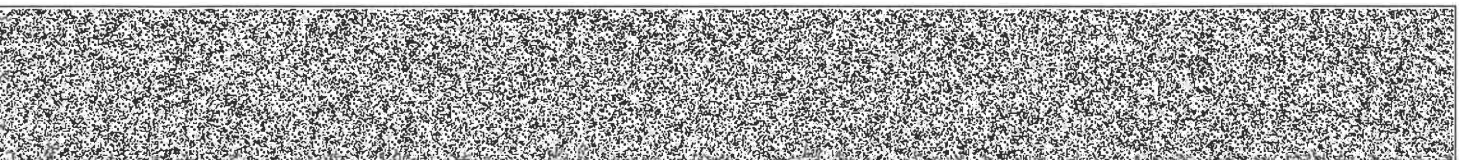


등기번호	833739
------	--------

<p>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3. 매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이 상기 제1호의 제1종 종류주식의 목표 배당금액에 미달할 경우, 회사는 제55조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제1종 종류주식의 목표 배당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배당할 수 있다.</p> <p>⑤ 회사는 보유자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</p> <p>1.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에 따른 금액(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1종 종류주 운영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의 누적 금액을 포함한다)에 달할 때까지 배당한다. (최종 운영기간 배당)</p> <p>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(이하 “순매각차익 배당가능이익” 이라고 한다)에 대하여, 순매각차익 배당가능이익의 50%는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, 나머지 5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⑥ 청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은 현금화하여 회사의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.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며,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로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.</p> <p>1.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2.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3. 위 각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.</p> <p>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어느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</p> <p>2022년 08월 31일 설정 2022년 08월 31일 등기</p>

<p>기 타 사 항</p> <p>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.</p> <p>1.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의 만료</p> <p>2. 주주총회의 해산결의</p> <p>3. 합병</p> <p>4. 파산</p> <p>5.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</p> <p>6.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</p> <p>7.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</p> <p>8.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</p>

<p>회사성립연월일</p>	<p>2022년 06월 17일</p>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

등기번호	833739
------	--------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	2022년 06월 17일 등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수수료 1,000원 영수함

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·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
서기 2023년 04월 06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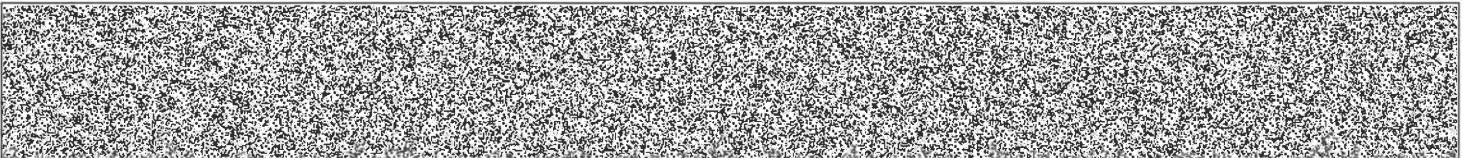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503000446010600241003220092317037318K1T1N1Q0U1D1 3

발급확인번호 7390-AAWV-GPPM

발행일:2023/04/06